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03
----------	------

제출연월일 : 2022. 1.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업소 인센티브, 포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안 제8조)
- 바. 착한가격업소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1. 12. 8. ~ 2021. 12. 28.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 의견) :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관련, 모니터 요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내용 규정이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 반영결과 : 불수용(법정의무사항 아님)

9.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공정경제과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업소 중 영세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 업소의 소비자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이고,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을 것
2. 위생·청결기준 :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이 위생적이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서비스 기준 : 친절도,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4.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시장이 정하는 각종

시책을 이행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운영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팀장 직위·성명	상권지원팀장 이소영
	주무관 성명·전화번호	이영규 (790-6876)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8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소상공인법)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